

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시설 이용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[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]과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(이하“호텔”이라 한다)은 시설 이용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.

- 다 음 -

제 1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“진흥원”이 “호텔”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의 상호간 이익증진 및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.

제 2조 (사용시설)

“진흥원”은 “호텔”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모항 해변길 73 소재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시설을 사전 예약 원칙으로 이용 할 수 있다.

제 3조 (협약 기간 및 내용의 변경)

①본 협약의 이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다만 “진흥원” 또는 “호텔”이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협약갱신 또는 협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본다.(단, 매년 7월 13일부터 8월 25일, 12월 31일, 징검다리 연휴는 협약 기간에서 제외 별도 요금 적용)

②“진흥원”과 “호텔”은 협약기간 중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수정 변경 할 수 있다.

제 4조 (협약 조건)

“호텔”은 “진흥원”에게 객실을 아래와 같이 할인 적용하여 제공한다.

객실타입	정 상 가	주 중 가(일~목)	준 주 말 가(금)	주 말 가(토)	오션뷰 추가
13평형	200,000	70,000(65%)	90,000(55%)	100,000(50%)	예약 시 문의
19평형	260,000	91,000(65%)	117,000(55%)	130,000(50%)	해당 없음
25평형	360,000	126,000(65%)	162,000(55%)	180,000(50%)	예약 시 문의
38평형	560,000	196,000(65%)	252,000(55%)	280,000(50%)	해당 없음
40평형	660,000	231,000(65%)	297,000(55%)	330,000(50%)	해당 없음
64평형	880,000	308,000(65%)	396,000(55%)	440,000(50%)	해당 없음

* 연휴(2일이상연속휴일) 기간 제외[문의 : 063-580-0800] *13평과 25평은 오션뷰(전망료)₩20,000추가(사전必확인)

제 5조 : (시설 사용 계약 체결)

“진흥원”은 “호텔”의 객실진흥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 “호텔”에게 이용 신청을 하고, “호텔”이 제공 가능한 객실 내에서 이용자가 예약 및 정산 원칙으로 객실 계약을 체결 한다.

제 6조 : (예약 이용 및 취소 위약금)

① “진흥원”의 임직원은 “호텔”의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 “호텔”의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예약 문의 후 예약 가능 시 계약을 체결하고 객실 입실 시 사원증(명함)을 반드시 지참 제시하여야만 본 계약의 혜택으로 이용 가능하다.

[단, 사원증 미제출 시 “호텔”이 정한 일반(추가)요금 지불 후 이용이 가능하다]

② 객실 예약은 15일 전부터 가능하며, 제5조 조건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다.

③ 계약 취소 관련 위약금

10일전 취소 시	별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	9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10% 지불
8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20% 지불	7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30% 지불
6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40% 지불	5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50% 지불
4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60% 지불	3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70% 지불
2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80% 지불	1일전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중 90% 지불
당일 취소 시	총 지불 비용 100% 지불		

*단, 예약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 시 내부 검토 후 위약금 감면 또는 전액면제 가능함.

*당일 예약 당일 취소는 제6조 3항 위약금 면제되며, 단 토요일, 연휴 기간 내 당일 예약 취소시 100% 위약금 징구.

제 7조 : (대금 정산)

“진흥원”의 이용자가 사용한 이용료는 현장 결제 및 개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조 : (시설 이용 불가 통보)

“호텔”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시설 사용이 불가할 경우, “호텔”은 “진흥원”에게 최소 10일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“진흥원”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제 9조 : (신의 성실)

① “호텔”은 “진흥원”의 임직원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.

② “진흥원”은 임직원들이 “호텔”을 이용함에 있어 “호텔”과의 계약 내용을 사내 계 시판, 사내망 등을 활용 공유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.

③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을 이용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화재, 도난 및 집기 비품, 시설물 파손 등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.

제 10조 : (권리 의무의 양도)

“진흥원”은 “호텔”의 서면 승인 없이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 11조 : (해지)

“호텔”과 “진흥원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일자로부터 발생한다.

- 1) “호텔”과 “진흥원”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2) 파산, 화의, 부도처리, 회사정리절차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 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) 기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

제 12조 : (협약서 조항의 해석)

본 협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협약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호텔”과 “진흥원”의 쌍방 협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부결될 경우 “호텔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 13조 : (효력)

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제3조에 명기된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본 협약을 증명하기위하여 “호텔”과 “진흥원”은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제 14조 : (법적 구속력)

본 업무 협약은 양사의 상호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2015년 6 월 12 일



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 해변길 73
전북개발공사 모항해나무가족호텔

사장 홍성춘 (인)



KOCCA
한국콘텐츠진흥원

전남 나주시 교육길 35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송성각 (인)

